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1

제출일자 : 2007. 6. 5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직(안 제4조)

-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개인, 단체)으로 구성
- 동·단체 단위 방재단 구성(동·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를 둠)

나. 직무 등(안 제5조)

- 단장, 부단장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다.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안 제7조)

- 단장, 동대표, 단체대표, 전문가로 구성
 - ▷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 요청

라. 임무(안 제8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
 -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 활동
 - ▷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 이재민 구호, 전염병 방재활동 지원 등

마. 운영 등(안 제10조)

-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
 - ▷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임무 수행 중 사고대비 보험가입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교육훈련비 등

바. 교육·훈련(안 제13조·안14조)

-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 원칙, 구청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교육은 연 2회 8시간 이상,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

사. 중앙지원단 자문(안 제15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나. 예산조치 :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요구(소요물품구입비 4,200천원)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7. 4. 13 ~ 5. 3(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마. 기타 : 표준 조례안 시달(시 방재민방위과-2776, 2007.2.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방재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고, 구의 동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에서 통합 운영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구의 동·단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대표 과반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대표는 해당 동 및 해당 단체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구의 동 및 단체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제5조 (직무 등)**
-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⑤ 구의 동 대표는 소속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구의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⑥ 단장, 부단장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구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 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 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구청장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연락체계 유지, 구급·구조 및 차량 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종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은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운영비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부단장, 단원 등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별 기준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
방재단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 ○(인)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명	(남·여)	연령	혈액형
주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전화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p>[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p> <hr/>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
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체명	대표자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명	여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명 여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
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3)]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여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m²)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명	(인)	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1) 또는 제2호서식(2)의 등록번호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 장소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1)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2)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서식(3)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로 제출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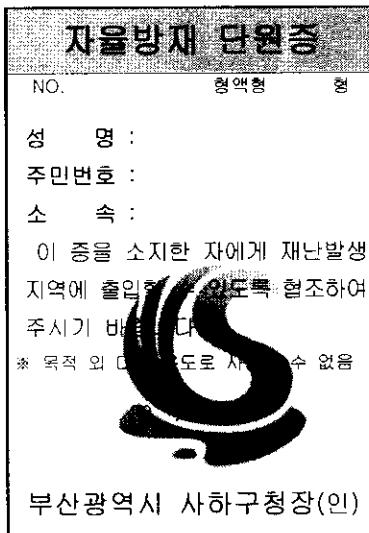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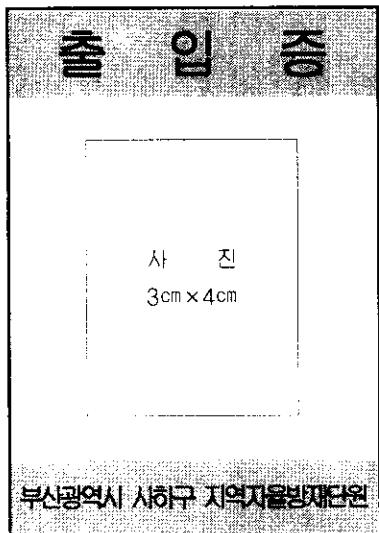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7.7cm

5.5cm